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해설편 5p 번호 : 6	문제-본문	수정 사유	해설 수정
해설편 5p 번호 : 6	문제-본문	감정평가사 1차 전과목 4개년 기출문제집 유료 물이 이를 취소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[2005가71650, 71656, 71673]. 04 *** 답 ㉔ 정답해설 ㉔ 제24조 제2항 오답해설 ① 법원의 재산관리인의 초과행위위계의 결정은 그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상해의 차분행위를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기왕의 차분행위를 추인하는 행위를 행위로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. 따라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법원의 초과행위위계가 결정을 받아 그 허가결정등본을 매수인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이전에 한 부재자소유의 주식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[80다3003]. ③ 부재자의 지배로서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의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재자의 사망 간주시점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하고 부재자의 실종선고 자체를 원인으로 한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므로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[86다20]. ④ 실종자에 대하여 1950. 7. 30. 이후 5년간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이미 1988. 11. 26. 실종선고가 되어 확정되었는지도, 그 이후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1992. 12. 28. 새로이 확정된 실종선고를 기초로 상속관계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[95다12730].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했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어야 실종선고 전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가 회복된다.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·유증의 개시는 그 개시시점 소급하여 무효로 되고, 상속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로서 처분시효 소급하여 무효로 되며, 실종자의 배우자가 재혼하였다면 전혼의 부활로 인해 후혼은 중혼으로서 취소대상이 된다. 05 *** 답 ㉔ 정답해설 ⑤ 청산인은 공고된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며, 이 경우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[제43조]. 오답해설 ① 제45조 제1항, 제42조 제2항 ② 제74조 ③ 제40조 제2호 ④ 민법 제81조, 제83조, 제87조와 같은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기 때문에 소위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만일 그 청산절차이나 청산인이 청산법인의 목적행위 외의 행위를 한 때는 무효라 아니할 수 없다[가2006]. 06 *** 답 ㉔ 정답해설 ② 법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라고 하더라도,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발생에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좇아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[86다가1170]. 오답해설 ① 제15조 제1항 제2문 ③ 비법인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,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, 공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[2002다27088]. ④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법원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, 대표자의 행위가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그 대표자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[제35조 제1항], 또한 사원도 위 대표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거나 이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하여 위 대표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[2006다37465]. 제1과목 민법 정답 및 해설 5	① 제35조 제1항 제2문
		수정 사유	오타 수정

위치	오류유형	수정 전	수정 후
해설편 44p 번호 : 38	해설	오류(www.dobooks.co.kr) 37 ★★★ 정답해설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(정유하가의 대상 등)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·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같다. 1. 건축물의 건축 등 : 「건축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(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)의 건축, 용도변경 2. 공작물의 설치 :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(건축물,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)의 설치 3. 부지의 경질변경 : 정비(정비구역, 정비(총량기, 정지량(총량기, 부설 등)의 방법으로 부지의 경질을 변경하는 행위, 부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. 토석의 채취 : 흙·모래·자갈·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, 다만, 부지의 경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항에 따른다. 5. 배치분할 6.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: 이등이 설치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. 축목의 방목 및 사육 39 ★★★ 정답해설 ② 정비사업에의 추진(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「재건축사업에의 한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)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(재개발·재건축사업의 지정개발자) ① 시장·군수 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치분할규칙, 「시회기반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민간투자법인 또는 신약업자로서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(법 제27조 제1항). 1. 현재까지 「재건축 및 안전관리 기법법」 제27조 또는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사용제한·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급박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	3. 신약업자로서 정비구역의 토지 중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약받은 자. 이 경우 정비구역 전체 면적에서 국·공유지는 제외한다. (22년 12월 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, 22년 12월 11일 시행) 법 개정으로 인한 해설 추가
수정 사유			

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
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.